

## 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정관 제6조(임원의 결격사유) 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(개정 2020.10.23.)

1. 미성년자

2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, 제6호의3, 제6호의4,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3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(삭제 2020.10.23.)

5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